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의안 번호	987
----------	-----

2023. 09. 05.
주택공간위원회

I.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 8. 10. 박석 의원 발의
- 회부일자: 2023. 8. 21.
-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20회 임시회 제3차 주택공간위원회 (2023. 9. 5. 상정·의결)

II. 제안설명 요지 (박석 의원)

1. 제안이유

- ChatGPT 등 직원들이 급변하는 ICT 기술 트렌드에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소속 공무원의 정보 이용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 국토교통부의 스마트도시 종합계획 수립 주기(5년)와 계획 수립·승인에 소요되는 시간(최소 18개월) 등을 고려해 서울시의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현실화하고, 스마트도시위원회의 기능 및 필요성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존속기한을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함(안 제5조)

나. 스마트도시위원회의 존속기한을 규정함(안 제9조의 2)

다. 공무원의 정보 접근 및 이용 지원 보장 근거를 신설함(안 제19조의 2)

Ⅲ.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오정균)

■ 발의배경 및 주요내용

- 이 개정조례안은 정보통신기술(ICT) 트렌드 및 내·외부 환경변화에 대응한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의 스마트도시 종합계획 수립주기(5년)에 맞춰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변경(3년→5년)하고(안 제5조), 스마트도시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신설하며(안 제9조의2 신설), 서울시 공무원의 정보이용능력 향상을 위해 신기술 이용료의 비용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개정안의 주요내용>

주요내용	
▶ 안 제5조(개정)	·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변경
▶ 안 제9조의2(신설)	· 스마트도시위원회 존속기한 규정
▶ 안 제19조의2(신설)	· 공무원의 정보이용 능력 향상을 위한 신기술 이용료 지원 근거 마련

-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마트도시법”)과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능정보화 등 정보화 정책의 수립·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¹⁾으로 하고 있음.

■ 주요 개정사항 및 검토의견

(1)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5조제1항)

- 안 제5조제1항은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기본계획에는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중장기 발전방향, 정책의 목표와 전략 및 추진체계, 각 분야별 정책, 시민·단체·기업·공공기관 등과의 협력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음²⁾.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기본계획(2021~2025) 주요내용>

(2021.12., 스마트도시정책관)



- 1)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과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능정보화 등 정보화 정책의 수립·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2)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정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3년마다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정책의 기본방향 및 중장기 발전방향
 2. 정책의 목표와 전략 및 추진체계
 3. 각 분야별 정책
 4. 시민, 단체, 기업, 공공기관 등과의 협력
 5. 정보보안, 이용자 권익 보호
 6. 정보문화 창달, 정보격차 해소 등 역기능 방지
 7. 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계획
 8. 그 밖에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스마트도시법 제4조에 따른 스마트도시종합계획,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과 「전자정부법」 제5조에 따른 전자정부 기본계획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정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3년마다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 ----- 5년마다 ----- ----- -----
② (생략) 1.~8. (생략)	② (생략) 1.~8. (생략)
③ (생략)	③ (생략)

- 현재 상위법인 스마트도시법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에서는 스마트도시계획의 내실화³⁾를 유도하기 위해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공모 시, 지자체의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여부’를 우대사항으로 정하고 있음(검토 보고서 붙임2 참고).

구분	스마트도시법	전자정부법	지능정보화 기본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정보통신기술을 도시건설 영역으로 확대 도시경쟁력 향상 및 지속가능한 발전 촉진, 국가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	행정업무 전자화 전자정부 효율적 구현, 행정의 생산성, 투명성 및 민주성 향상	지능정보사회 구현 지능정보사회의 구현 이바지 및 국가 경쟁력 확보
계획수립	스마트도시종합계획 (5년 단위)	전자정부기본계획 (5년 단위)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3년 단위)

- 이와 관련하여 현행 조례에서는 서울시가 기본계획을 3년 주기로 수립⁴⁾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기본계획의 수립·승인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고 있어 기본계획이 기능과 역할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수립주기 확대가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파악됨.

3) 스마트도시담당관-1913(2022.2.24.), “지자체 스마트도시계획 관련 헬프데스크 운영 개편 알림 및 계획수립 수요조사
4)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정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3년마다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이에 따라, 현행 기본계획의 수립주기를 국토교통부의 종합계획 수립 주기에 맞춰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는 것은 기본계획의 효용성 제고를 위해 적절하다 사료됨.
- 참고로, 최근 승인된 타 시·도의 기본계획 수립에 소요되는 기간을 확인해본 결과, 계획수립과 승인에는 약 21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남.

<p>※ '22년 이후 계획 승인된 특·광역시 기준, 계획수립 14개월, 승인 7개월 소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울산 : 총 22개월 - (수립 14개월) '21.3.~'22.4. / (승인 8개월) '22.5.~'22.12. ▶ 부산 : 총 15개월째 - (수립 진행 중) '22.5.~ 현재

(2) 스마트도시위원회 존속기한 규정(안 제9조의2)

- 안 제9조의2는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5)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9조의 2(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위원회는 이 조례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구성·운영중에 있으며 기본계획의 수립, 기본계획의 중요사항 변경, 주요 정책의 추진성과 평가,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서울시장과 위촉직위원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디지

5)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위원회의 존속기한) ① 시장 등은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조례 또는 규칙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존속기한 만료 최소 6개월 전에 위원회 존속기한 연장검토 요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총괄부서의 장은 존속기한 연장여부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소관 부서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털정책관을 당연직 부위원장으로 임명하고, 당연직 위원은 주요 부서의 국장급과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으로 구성하였음.(검토보고서 붙임3 참고)

<p>○ 스마트도시위원회 설치근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거 : 「서울특별시 스마트 도시 및 정보화 조례」 제7조 <p>○ 스마트도시위원회 기능 및 구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능 :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기본계획의 중요사항 변경, 주요 정책의 추진성과 평가,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심의 - 구성 : 30인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 원 장 : 시장, 위촉직 1명 공동위원장 / 부위원장 : 디지털정책관, 위촉직 1명 공동부위원장 · 당 연 직 : 디지털정책관, 교통·안전·환경·복지·경제·행정 분야 등 주요 부서 국장급 이상 공무원 3명 이내,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 <p>※위원자격 : 학계, 기업, 민간단체,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중에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관련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p> <p>※ 존속기한 : 없음</p>
--

- 위원회는 지난 4년간 연평균 3회 총 11회 개최되어 디지털정책관의 주요 사업과 현안사항에 대한 자문·심의를 실시하였는데, 향후 서울시가 스마트도시 정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위원회 활성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음.

<스마트도시위원회 운영실적(2020~2023)>

2020년(3회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4.8. 2020년 1차 위원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년 서울시 정보접근성 수준향상 시행계획 심의 ▶ 2020.5.21. 2020년 2차 위원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방안 자문 - 주요사업 추진 경과 보고 및 자문 ▶ 2020.12.23. 2020년 3차 위원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중간 보고 - 스마트도시정책관 주요 현안 보고
2021년(2회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4.2. 2021년 1차 위원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완료에 따른 보고 - '21년 서울시 정보접근성 수준향상 시행계획 심의 ▶ 2021.12.16. 2021년 2차 위원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기본계획 심의 - 주요사업 추진 경과 보고 및 자문(메타버스,이사온)

2022년(4회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2.17. 2022년 1차 위원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년 서울시 정보접근성 수준향상 시행계획 심의 - '22년 시민 체감 사물인터넷(IoT) 서비스 발굴 자문 ▶ 2022.7.27. 2022년 2차 위원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년 스마트도시정책관 주요업무 보고(안건 15건) - 서울시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추진계획 자문 ▶ 2022.10.28. 2022년 3차 위원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정책관 조직개편 현황 보고 - 디지털정책관 주요 사업 보고 및 자문(안건 9건) - 디지털정책관 현안 보고(카카오 서비스 장애 관련) ▶ 2022.12.20. 2022년 4차 위원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정책관 주요 성과 보고 및 자문(안건 15건)
2023년(2회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3.29. 2023년 1차 위원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년 서울시 정보통신접근성 수준 향상 시행계획(안) 심의 - 2023년 디지털 동행 플라자 조성 자문 - 2023년 서울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시행계획 보고 ▶ 2023.7.4. 2023년 2차 위원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대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 서울기록원 주요 업무보고 및 자문

(3) 공무원의 정보 접근 및 이용 지원 보장 근거 마련(안 제19조의2)

- 조례 제19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에서는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소프트웨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정보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제19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① 시장은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소프트웨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정보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 개정안에서는 안 제19조의2를 신설하여 ‘서울시 공무원의 정보이용 능력 향상을 위해 인공지능 등 신기술 이용료를 지원’할 수 있게 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에서 규정한 ‘소속공무원’의 범위가 너무 넓고 ‘인공

지능 등 신기술'의 종류나 지원 방법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점, ICT의 특성상 신기술의 종류나 지원 방법을 구체적으로 한정하기 어렵고 이러한 기술들이 업무와 관련성을 규정짓기가 모호한 측면이 존재함.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9조의 2(공무원의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정보이용 능력 향상을 위해 인공지능 등 신기술 이용료 지원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또한, 이 조례의 상위법령인 스마트도시법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능정보화 등 정보화 정책의 수립·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지능정보화 기본법」은 지능정보화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능정보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하고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며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 조례의 개정을 통해 '시장이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비용지원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검토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나, 인재개발원이나 후생복지제도 등 별도의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⁶⁾은 없는지, 소요 예산은 추계가 가능한지 등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겠음.
 - 참고로, 개정안에 대한 시의회 재정분석담당관의 비용추계결과, 기술적 추계가 어렵다는 사유⁷⁾로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비용추계서가 미첨부 되었음.

6)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5조 및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지방공무원의 체계적인 능력개발을 위하여 5년 단위의 교육훈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으며, 디지털재단에서도 현재 인공지능AI 교육사업을 추진중에 있고,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는 직무·전문성교육 과정으로 디지털역량교육과정을 운영중에 있음(검토보고서 붙임4 참고).

7) 민간에서 개발하여 사용중인 인공지능 신기술 이용에 대한 유사사업을 찾을 수 없어 기술적 추계가 어렵다는 입장임(비용추계서 참고)

■ 종합의견

- 이 개정조례안은 기본계획의 효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확대(3년→5년)하고,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명시(2027년 12월 31일까지)하려는 것으로, 이에 대한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서울시 소속 공무원의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을 위한 비용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는 소요비용과 지원필요성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수정안의 요지 : 없음

VII. 심사결과 : 원안 가결(출석위원 전원 찬성)

- 부대의견 : 공무원의 정보접근 및 이용료 지원근거를 마련한 안 제 19조의2는 향후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상임위에 보고한 후 집행할 것을 조건으로 의결함.

VI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3년”을 “5년”으로 한다.

제9조의2 및 제19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9조의2(공무원의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정보이용 능력 향상을 위해 인공지능 등 신기술 이용료 지원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정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u>3년</u>마다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②·③ (생략)</p> <p><u><신 설></u></p> <p><u><신 설></u></p>	<p>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 ----- ----- <u>5년</u> ----- ----- ----- -----.</p> <p>②·③ (현행과 같음)</p> <p><u>제9조의2(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u></p> <p><u>제19조의2(공무원의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정보이용 능력 향상을 위해 인공지능 등 신기술 이용료 지원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u></p>